##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2014·11· 4 조례 제1079호 일부개정 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 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 일부개정 2020· 6·30 조례 제1612호 (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) 일부개정 2023·11· 1 조례 제201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택시운송사업"이란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조제1항제2 호에 따른 구역(區域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말한다.
  - 가. 일반택시운송사업: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  - 나. 개인택시운송사업: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 자가 직접 운전(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)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- 2. "택시운송사업면허"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.
- 3. "택시운송사업자"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택시운수종사자"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 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1.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, 운전자·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·안심서비스 강화,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
  - 2.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선진지 견학,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
  - 3.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,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,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
  - 4.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,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
  - 5.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5조(종합계획 수립)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.
  - 1.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  - 3.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5조의2(차령)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3·11·1]

제6조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, 운수사업자,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 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,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.
  -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. 〈개정 2020・6・30〉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 천시택시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 - 1.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택시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
  - 4.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,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  -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
  - 1. 택시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 성,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2.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
  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##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-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 은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, 향응수수, 배임,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 -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장팀장이 되며,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- 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5조(재정지원 사업)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

- 2. 운임, 요금결재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·개선사업
- 3.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
- 4.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
- 5. 택시쉼터 지원사업
- 6.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
- 7. 출·퇴근 길 교통봉사,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 각종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
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6조(재정지원 심의) 시장은 제15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선정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7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〈개정 2014·12·31〉
  - 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  - 2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  - 3.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
  - 4. 자기자본의 부담액
  - 5. 보조사업 기간
  - 6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  -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〈개정 2014·12·31〉
- 제18조(보조금의 지급결정)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.
  - 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
  - 2.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  - 3.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

##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- 4.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(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)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〈개정 2014·12·31〉
-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19조(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
  -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
  - 3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4. 시장이 경영상태,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5.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제20조(관리감독)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 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 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·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,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자료제출)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〉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③ 「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하며, 제18조제3항 중 "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③ 부터 ③ 까지 생략

부칙〈2020·6·30 조례 제1612호,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·11·1 조례 제201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